

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
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

의안 번호	3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(진정 성립의 확인) 및 비용이 발생하는 ‘공증의무’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‘이의신청 기간’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에 따른 ‘공증의무’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‘공증의무’ 규정을 삭제
- 나.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‘이의신청 기간’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,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(관계법령 발췌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1.03.19.~03.29)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비규제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제4조(「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의 제8호를 제7호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출해야 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제2항의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p> <p>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.</p>	
--	--

□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협약체결 등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16조(협약체결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협약체결 등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9조(협약체결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<후단 삭제></u>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협약체결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7조(협약체결)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<후단 삭제>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□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협약체결 등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</u>	제21조(협약체결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□ 평창군 호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협약체결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·수탁 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	제18조(협약체결) ----- ----- ----- ----- 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7.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.</u>	<삭제>
8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증인법

제2조(공증인의 직무)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(囑託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.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.

2. 사서증서(私署證書) 또는 전자문서등(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한 인증

제57조(인증 방법)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.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
연락처	(033) 330 - 2210